

瑞山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8. 3. 3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3. 31
- 라. 上程日字 : 1998. 4. 10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현행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 현행 조례를 개정 승합, 화물자동차를 추가 차종으로 확대하여 이중 최초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안 제2조 제2항, 안 제4조 제1항).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중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 인정 조항 변경 및 신설(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 제2항 제4호).
- 매매 알선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소에 제시된 자동차
 - 천재지변 교통사고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감면조례로써
- ◎ 내무부장관이 세제13400-37('98.2.12)호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허가하고, 충남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조례개정 선행 절차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 ◎ 시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25 호
의결년월일	1998. . . (제 회)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3 .3/.

서산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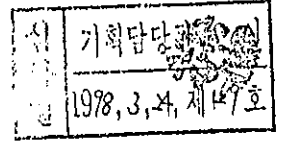
제출년월일 : 1998. 3. 3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 이에 승합, 화물자동차를 추가 차종을 확대 이중 최초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제1항)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중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 인정조항 변경 및 신설(안제2조 제3항, 안제4조 제2항 제4호)
 - 매매알선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소에 제시된 자동차
 - 천재, 지반,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뭇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

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기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였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p>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현행

개정안

(신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어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감면)①-----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신설)</p>	<p>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p> <p>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p> <p>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p> <p>4. 이륜자동차</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자동차</p>